

03 레저세

※ 마권세('61, 경마) → 경주·마권세('94, 경마, 경륜·경정 추가) → 레저세('02) → 레저세('03, 경마, 경륜·경정, 소싸움 경기 추가)

1. 과세대상

- 경륜 및 경정, 경마, 전통소싸움 등의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
- ※ 사업장 분포 : 경마(과천, 부산경남, 제주, 장외 29개소), 경륜(부산, 창원, 광명, 장외 20개소), 경정(하남, 장외 18개소), 소싸움경기(청도)

2. 납세의무자: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

- 한국마사회(경마), 국민체육진흥공단·부산지방공단·창원경륜공단(경륜), 국민체육진흥공단(경정), 청도공영사업공사(소싸움)

3. 납부 및 납기

- 납부 :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
 - (본장)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
 - (장외발매소)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%씩 각각 신고·납부
다만, 본장이 신설될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% 신고·납부
- 납기 : 승자·승마·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납부

4. 과표 및 세율

- 승자투표권·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
- ※ 투표권 발매가액의 10% 부과되며,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인분